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9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6. 17(수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0. 5. 22.
- 회부일 : 2020. 5. 26. (의안번호 : 20-67)

2. 제안이유

-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에 따라 환경부 기준의 구체적 분리배출을 적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조정(안 제2조3항)
 -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지만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포함되어 온 다류(茶類), 아이스트림류 업종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
-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제작 물품 구체화(안 제8조제2항)

-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반영
(안 제10조제1항)
- 문전수거제 정착화를 위한 문전수거통 사용 명시
(안 제10조제2항)
- 용어의 미비점 보완 등(안 제12조제1항~제3항, 제15조제1항)

4. 관계법령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5. 검토보고

-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에 따라 환경부 기준의 구체적 분리배출을 적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 - (안 제2조3항)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조정하여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지만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포함되어 온 차류(茶類), 아이스크림류 업종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임.
 - (안 제8조제2항)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·배포에 대한 근거 조항 구체화하는 내용임.

- (안 제10조제1항)에는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기준 표준화 권고 반영 환경부 기준으로 표준화 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제도 정착에 기여 하는 내용임.
- (안 제10조제2항)문전수거제 정착을 위한 문전수거통 사용 규정 하는 내용임.
- (안 제12조제1항~제3항, 제15조제1항)에는 용어의 미비점 보완 등을 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에 따라 환경부 기준의 구체적 분리배출을 적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는 내용은 상위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
○ 마포구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감량목표치가 자치구 중 가장 선두에 있어 환경부장관상을 여러 번 수상한 점은 고무적이며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가정 및 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절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9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6. 17(수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0. 5. 22.
- 회부일 : 2020. 5. 26. (의안번호 : 20-68)

2. 제안이유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방 화장실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방화장실의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요건 완화
 - 법 제9조(개방화장실)에 따라 지정하는 개방화장실의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
- 법제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문장 정비

4. 관계법령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제8조(개방화장실의 지정 등)
- 「조례 규제개선 사례 전파」
[법제처 자치법규지원과-2134(2017.12.29.)]
- 자치구 「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 개정 권고 표준안
[서울특별시 질병관리과-3416(2019.2.14.)]

5. 검토보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방화장실의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요건 완화되어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(개방화장실의 지정 등)에 따라 지정하는 개방화장실의 규모를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하는 내용과 법제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는 것임.
- 검토의견으로는
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는 개정사항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

편의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공중화장실 관리를 청소행정과로 이관하여 관리함으로써 위생 및 청결 상태가 향상된 것은 잘된 점이라 판단됨. 아울러, 화장실 이용 수칙 안내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식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